

 환경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.0	보 도 자 료		
	보도일시	2017년 1월 20일 조간 (1. 19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서흥원 과장 / 전국환 사무관 044-201-6750 / 6757
	배포일시	2017. 1. 18. / 총 6매	

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,053곳 환경안전 진단...기준 미부합 2,459곳 개선 이끌어

◇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기준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과 고발, 정보공개 등 엄격 조치 예정

- 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,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, 17.5%인 2,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'환경보건법'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.
-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,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 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.
-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㎡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,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'환경보건법'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.
-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㎡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 4,000여 곳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년간 환경안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4,053곳을 점검했고 3,100여 곳은 이전에 점검을 끝냈다.

-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4,053곳의 환경안전 진단 결과,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.8%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, 이 중 97%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.
 - * 중금속 기준: 납, 수은, 카드뮴,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 0.1% 이하이고 납은 0.06% 이하
-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, 13.5%인 1,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.
 - ※ 총휘발성유기화합물 $100\mu\text{g m}^3$ 이하, 폼알데하이드 $400\mu\text{g m}^3$ 이하
-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,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.
 - 아울러, 해당 시·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과 개선을 독려했으며,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,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-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“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자체,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, 교육, 홍보,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및 2016년 환경안전진단결과.
 2. 질의응답.
 3. 전문용어 설명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국환 사무관(☎ 044-201-67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어린이활동공간 현황

적용시기	합계	어린이 놀이시설	어린이 놀이시설 외						
			소 계	어린이집	유치원	초등학교	특수학교	도서관	
합계	129,634	64,968	64,666	43,015	9,044	6,190	168	6,249	
기적용 (‘09.3.22일 이후 설치)	48,295	32,621	15,674	14,032	1,372	220	17	33	
적용 유예	계	81,339	32,347	48,992	28,983	7,672	5,970	151	6,216
	‘16.1.1	57,273	32,347	24,926	5,647	6,942	5,970	151	6,216
	‘18.1.1	24,066	-	24,066	23,336	730	-	-	-

□ 2016년 진단결과

< 총괄 >

- 어린이활동공간 14,053개소를 진단한 결과, 2,459개소(17.5%)가 환경 안전관리기준에 미달

구 분	계	어린이집 보육실	유치원 교실	어린이 놀이시설
진단시설	14,053	12,919	168	966
기준 미부합	2,459 (17.5%)	2,420	32	7

< 세부 진단결과 >

- (제1호) 활동공간에 사용된 재료의 부식·노후화 여부
 -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, 도료 및 마감재료 등에서 일부 노화현상이 발생한 시설은 85개소임
 - 부식·노후화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개선 방법 안내 및 조치 유도
- (제2호가목)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
 - 진단시설 14,053개소 중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에 미부합한 시설은 818개소(5.8%)
 - 중금속 총함량 기준인 0.1%를 초과한 시설이 748개소이며, 납의 기준인 0.06%를 초과한 시설은 794개소
- (제2호나목) 실내활동공간의 오염물질(톨루엔, TVOC, HCHO) 방출여부
 - 보육실 등 실내공간 13,087개소의 TVOC, HCHO 분석결과, 1,763개소(13.5%)가 기준에 미달

구분	합계	어린이집(430㎡ 미만)	유치원
진단 시설 수	13,087	12,919	168
미부합 시설 수	1,763	1,744	19

- (제5호) 합성고무바닥재의 중금속 함량, 폼알데하이드 방산량
 - 실외 활동공간에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966개소에 대한 분석결과, 7개소가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하였으며,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모두 기준 이내였음

1.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및 환경보건법 적용시기는?

-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총 129천 개소로서 '09.3.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'16.1.1일부터 적용되며,
- 430m³ 미만 사립 어린이집·유치원은 '18.1.1부터 적용

(개소)

적용시기	합계	어린이 놀이시설	어린이 놀이시설 외					
			소 계	어린이집	유치원	초등학교	특수학교	도서관
합계	129,634	64,968	64,666	43,015	9,044	6,190	168	6,249
기적용 ('09.3.22일 이후 설치)	48,295	32,621	15,674	14,032	1,372	220	17	33
적용 유예	계	81,339	48,992	28,983	7,672	5,970	151	6,216
	'16.1.1	57,273	24,926	5,647	6,942	5,970	151	6,216
	'18.1.1	24,066	-	24,066	23,336	730	-	-

2. 소규모시설 진단결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대책은?

- 감독기관(지자체, 교육청)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, 법이 적용되는 '18년에는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 법적 조치(1차 개선명령 →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)

3. 납 등 중금속의 위해성은?

중금속	위해성
납	주의력결핍, 과잉행동장애(ADHD), 뇌신경계 영향 등의 문제
카드뮴	고농도 섭취시 위자극, 메스꺼움, 구토, 설사 등을 유발. 단기간 노출 시 오한, 두통,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
수은	태아 또는 어린이의 신경발달 장애, 신장 및 중추신경계 손상, 인식·언어장애
크롬	섭취 시 졸음, 두통, 구토 등 유발. 피부 접촉 시 화상. 눈에 매우 자극적으로 접촉하면 실명

- **어린이활동공간** :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(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)으로 정하는 것
- **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** :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시설물, 도료나 마감재료, 목재, 바닥 모래 등 토양,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(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물의 부식화 및 노후화 여부 ▪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: 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의 합이 0.1%이하, 납 0.06%이하 ▪ 실내 활동공간 :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400μg/m³이하, 폼알데하이드 100μg/m³이하 ▪ 목재의 방부제 사용 여부 ▪ 토양의 오염물질 기준 : 중금속(카드뮴 4mg/kg, 비소 25mg/kg, 수은 4mg/kg, 납 200mg/kg, 6가크롬 5mg/kg), 기생충(란) 불검출 ▪ 합성고무바닥재의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의 합이 0.1%이하 -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/kg이하

- **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** : 석면건축물이 아닌 시설 중 「환경보건법」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,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상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만족하고, 최근 3년 내 환경안심인증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인증. 2015년 435개소, 2016년 456개소에 인증서를 부여